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2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김은혜 의원안)	3

I. 개요

1.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은혜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8. 19.
- (3) 회 부 일 : 2025. 8.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관세 조치는 완성차 및 부품업계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에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여, 경쟁력 저하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내적으로는 반기업 입법 추진으로 인한 노조의 파업 빈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은 해외

바이어 신뢰도 저하, 장기계약 축소, 해외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등으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용차를 2026년 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4).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김은혜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의4) ○ 적용대상 - 자동차를 <u>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u>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 감면한도 -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	☐ 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 적용대상 - 자동차를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u>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부 칙 ○ 시행일: 공포한 날 ○ 적용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김은혜의원안 2025. 8. 19. 발의(의안번호 12229)

☐ 개정안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년 동안(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70% 감면함으로써 자동차 구매유인을 제고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 내수·수출 회복 및 소비진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²⁾는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1) 2020년 2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하여 4,875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고, 이 특례는 2020년 6월 30일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³⁾에 따라 노후자동차를 신차(경유차는 제외)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직매장·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법률 제17073호 부칙(2020. 3. 23.)」

제8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거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778호 부칙(2020. 3. 14.)」

제14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도)를 감면해 주고 있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되었음.

- 현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법」⁴⁾에 따라, 배기량이 1천cc 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8인승 이하의 승용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포함), 캠핑용자동차 및 이륜차는 모두 출고가가격의 5%를 기본세율로 적용받고 있음.

2025년에는 경제정책방향⁵⁾을 발표하여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1. 3. ~ 6. 30. 출고분)에 한하여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⁶⁾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실시하였고,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책을 6개월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음.

- 개정안은 종전의 특례와 동일하게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함으로써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

4)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5) 「2025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합동, 2025.1.2.

6)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절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내수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특히, 한·미간 관세협상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완성차 및 부품 업체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 전반에 수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여, 경쟁력 저하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025년 하반기 자동차산업 전망]

(단위: 만대, 억불, %)

구분	2023	2024				2025(추정)					
		상반기	하반기	연간	증감률	상반기 (추정)	증감률	하반기 (전망)	증감률	연간 (전망)	증감률
내수	175.0	81.8	81.7	163.6	-6.5	84.1	2.8	81.9	0.2	166	1.5
국산차	145.3	68.4	66.3	134.7	-7.3	70.0	2.3	67.0	1.1	137.0	1.7
수입차	29.6	13.4	15.5	28.9	-2.5	14.1	5.2	14.9	-3.9	29.0	0.3
수출	276.6	146.7	131.6	278.3	0.6	140.7	-4.1	124.3	-5.5	265	-4.8
수출액	709.0	370	337.9	707.9	-0.1	361	-2.4	315	-6.8	676	-4.5
생산	424.4	214.5	198.3	412.8	-2.7	210.7	-1.8	191.3	-3.5	402	-2.6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2025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내수판매는 0.2% 증가, 수출판매는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개별소비세 감면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수출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⁷⁾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특례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년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대상으로 신설되었고, 2012년에는 전기자동차, 2017년에는 수소자동차가 동 제도에 포함됨.

개별소비세의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신설 당시 100만원이었으나 2024년 세법 개정으로 7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전기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자동차는 도입 당시 200만원이었으나 2018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수소자동차의 경우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4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구 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현행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70만원	300만원	400만원
적용기간	2009. 1. 1. ~ 2026. 12. 31.	2012. 1. 1. ~ 2026. 12. 31.	2017. 1. 1. ~ 2026. 12. 31.

주: 개별소비세액의 30%만큼 교육세 부과(surtax)

둘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시행시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개정안의 도입은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세수결손 상황 등을 고려할 때에 세수기반을 보다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승용차 내수판매가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승용차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불확실하고, 2020년에 실시한 종전의 특례는 코로나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시적인 것으로 이를 현 상황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